

인권에 대한 신학적 조명

1. 한국의 인권에 대한 신학적 자각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의 노동청년 전태일이 분신자살하였다. 22세의 이 노동자가 그토록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호소해도 그 어느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결국 그는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면서 동료 노동자의 유린되는 인권을 구해 줄 것을 호소했다. 1960년대 이후로 박정권이 내세운 이른바 근대화라는 화려한 청사진 뒤에 깔려서 죽어가는 인권에 관심을 둔 사람이 없던 시절에 전태일의 죽음은 그리스도교계를 포함한 전체 한국사회에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전태일의 죽음이 한국교회와 사회가 인권을 구체적으로 의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도 과히 틀리지 않은 말일 것이다.

전태일의 죽음이 있은 이후로 도시빈민선교를 위한 수도권도시선교위원회가 결성되었고(1971.9), 은명기독교 구속(1972.12), 남산 부활절 연합예배 사건으로 인한 박형규목사 등의 구속(1973.6) 사건 등이 있고 나서 한국교회는 1973년 11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통해 「인권선언」을 채택한 데 이어 1974년 4월 인권위원회를 발족시킴으로써 비로소 인권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이런 과정에서 한국의 인권사상이 서구의 그것과는 맥을 달

리하였다고 하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서구의 인권사상은 제도적으로 볼 때 영국의 「마그나카르타」(1215년)를 그 기원으로 한다. 그것은 국왕이 비록 불가피한 내적 압력에 의한 것이었을 망정, 자신의 전권(全權)을 제한하는 약속을 국민들에게 선포함으로써 국민들의 인권이 법적으로 보장받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물론 우리에게 도 덕치(德治)라는 정치이념이 있기는 했으나 민(民)의 인권옹호의 차원에서 지배자의 권한을 제한한 역사는 없었으며, 지배자의 횡포에 항거하여 인권쟁취를 위해 투쟁한 경우만이 있을 뿐이다. 기록에 남은 첫 투쟁의 선언으로는 고려시대에 무인(武人)들이 권좌에 앉아 난무할 때 농민봉기를 주도한 만적(萬積)의 경우이다.

경계(庚癸) 이래 공경대부(公卿大夫)는 천예(賤隸) 속에서 많이 일어났다. 장상(將相)이 원래 씨가 있으리오. 때가 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찌 근골(筋骨)을 수고롭게 하고도 매질 밑에서 괴로와만 하리오… 각기 그 주인을 죽이고 천적(賤籍)을 불살라서 삼한(三韓)으로 하여금 천인(賤人)이 없게 하면 공경장상(公卿將相)은 우리들이 모두 할 수 있다.

이른바 천민은 인권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인간이라 할 수도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각성하여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것은 폭력에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이와 맥을 같이한 것이 동학운동이다. 관권의 잔인한 박해에서 해방되어 인권을 찾는 길은 그것을 쟁취하는 길뿐이라고 보아 제폭구민(除暴救民)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세웠으며, 한걸음 나아가서 인권의 기본 거점으로 ‘인내천’(人乃天)을 내세우고 창의문에서 ‘민(民)은 국가의 근본이다’라는 근대적 선언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서구는 봉건체제이면서 세계적 연대관계를 가진 종교 귀족이 있어 저들이 왕권에 대하여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던 데 반해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민은 직접 자기의 권

의을 쟁취하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었다.

왕권이 무너지고 식민세력이 후퇴한 후 한국에 서구적인 바탕을 가진 이른바 민주헌법이 제정되었다.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터득했어야 할 이승만은 권력욕 때문에 표면에 내세운 주장과는 달리 친일 세력을 옹위하고 나섰다. 그중에서도 특히 경찰 등 수사기관과 군부는 완전히 저들 친일세력에 의해 독점되었다. 무엇보다 자기 민족의 독립을 방해하는 데 앞장섰던 저들이 건국 도상에서 민을 다스리도록 총칼을 잡았으니 인권유린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셈이었다. 사실상 저들은 일제가 사용하던 방법 그대로를 수사에 적용했으며, 그것은 법을 초월하려는 정부의 체질을 닮은 무법적 폭행으로서, 고문을 마치 주어진 과제나 권리처럼 행사하는 풍토를 만들었다.

저들의 일차적인 박해 대상은 좌익세력이었다. 그것은 이념문제이기 전에 정적(政敵)으로서 가치없는 숙청대상이었다. 저들에게 있어서 좌익은 인간이 아니었다. 따라서 인권 운운은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풍조가 수사 전반에 파급된 것이다. 반공사상에 철저한 그리스도교도들은 사랑을 말하는 것과 멸공한다는 것의 모순을 깨닫지 못한 채 이런 풍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빨갱이는 빨갱이일 뿐이지 인간이 아니라고 인식되었다. 바로 여기에서 인권은 그 기틀 자체가 혼들리기 시작하였다.

이 마당에 군사 쿠데타로 군부정치가 들어섰다. 반일 감정, 반공, 특히 6.25의 쓰라린 경험 등으로 전쟁윤리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휘몰려온 한국 그리스도교는 군국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제대로 분별할 힘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군부는 일제의 하급장교가 중심이 되었다. 따라서 국운은 외적·내적으로 일제의 망령에 의해 재장악된 셈이었다. 이로부터 인권탄압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폭력으로 정권을 장악할 계획을 세웠던 저들에게 살인 따위는 이미 전제되어 있는 바였으며, 폭력행사가 몸에 배인 저들에게 있어서 인권탄압을 합리화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저들은 총칼

로 정권을 잡고, 총칼로 근대화를 내세우고, 그것을 위해 일본과 밀착하였다. 그때 온 국민이 저항하였으나 저들은 자신들의 기질을 심분 발휘하여 일본유착을 강압으로 추진함으로써 일본이 물러간 지 20년만에 다시금 예속의 길을 연 것이다.

이른바 근대화는 국민과의 합의 아닌 폭력으로 국교를 정상화한 일본 자본과,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수탈하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GNP가 올라가면 갈수록 인권탄압도 가중되었으며, 수출고는 바로 인권유린의 지표가 된 셈이었다. 그러므로 외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영구집권을 위한 헌법개정, 유신체제 선포 등은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토대로 하는 자연스런 절차를 따르지 못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강행될 수밖에 없었고, 이같은 특정 앞에서 국민의 저항정신은 날로 고조, 확산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 속에서 한국 그리스도교는 인권에 대한 사명감에 눈뜨기 시작했고, 인권옹호에 나서게 되었으며, 이는 불가피하게 인권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요청하였다.

2. 인권에 대한 신앙양심적 투쟁과 신학적 선언

197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선교활동은 인권옹호와 궤를 같이했다. 빈민선교, 산업선교, 농민선교 등 구체적인 삶에 관심하는 선교 개념들의 등장이 그 증거였다. 인권에 대한 한국교회의 자세는 이처럼 그 출발에서부터 신학적 이론보다 사랑의 실천이 앞섰다. 그러므로 그것은 신학적 연구나 이론의 귀결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실천이 초래한 사건에서 결과한 것이었다. 인권에 대한 한국교회의 자세를 결정지은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인권과 관련한 많은 선언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1974년 11월 신학자, 목회자 다수의 동의를 얻어 발표된 「한국 그리스도인의 신학적 성명」은 당시의 인권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잘 집약하였다. 이 신학적 성명은 그 시대를 세가지 시각에서 예의 주시하는 것을 전제한다.

첫째, 권력이 그 한계를 알고 정의를 위해 행사되고 있는가?

둘째, 하느님께 속한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있는가?

세째, 신앙행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가?

이상의 시각에서 철저히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면서 다음 세 항목으로 논거하였다. 즉 1) 국가와 종교, 2) 인권, 3) 선교이다. 이 셋은 모두 인권과 관계된 주제들이었다.

무엇보다도 국가권력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출발한 것은 인권유린의 장본인이 국가를 등에 업은 정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서구신학이 저지른 치명적인 약점 내지는 죄악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현장체험을 통하여 간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서구신학은 권력과 결탁하여 자기를 확장해 왔다. 중세기의 교회는 권력과 결탁하여 여러번 암흑시대를 불러왔고, 정치적 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은 교권을 통해 신의 이름으로 합리화되곤 했다. 이에 항거하여 결기한 것이 종교개혁이다. 종교개혁은 로마법황의 횡포에 저항하여 신앙의 자유, 성서해석권의 쟁취라는 큰 목표 아래 이루어졌다. 그러나 인권적 차원에서 볼 때 종교개혁을 통해 나아진 것은 별로 없었다. 그것은 종교개혁자체가 정치권력을 등에 업고 이룩한 개혁이었기 때문이었다. 루터는 봉건 영주들의 권력을 교묘히 이용하면서 타협의 길을 모색했다. 그 결과가 바로 저 유명한 ‘두 나라설’이다. 두 나라 설에서는 로마서 13장을 크게 내세우는데, 그 주장에 따를 때 국가권력이 하느님의 도구로서 그 자율권을 인정받는 한편 교회는 종교 영역의 특권을 약속받는다. 그러므로 교회는 정치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상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루터는 그 자신의 영향으로 인권에 대한 자각률 얻어 농민의 기본권을 찾기 위해 결기한 토마스 뮌처의 농민운동을 가차없이 탄압하도록 권력자들에게 호소했다. 농노 폐지, 어렵의 자유, 독점삼림의 개방, 고역경감(苦役輕減), 소작권 확보, 토지의 재분배, 공민권 요구 등 농민의 주장은 바로

하느님이 부여한 기본권으로서, 법황의 횡포에 항거한 루터라면 당연히 앞장서서 지원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그것을 외면하고 왕후 귀족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이를 박해하였던 것이다.

칼빈 역시 권력과 교권을 한손에 쥐고 자신이 내세운 교리를 부정하는 자는 이단자로 정죄, 화형에 처하는 일을 서슴치 않았다. 이런 과정에서 종교개혁은 사분오열되었는데, 그 큰 이유는 권력에 대한 신학적 정립이 없었기 때문이며, 그것은 바로 인권문제를 의식하지 못하는 결과뿐 아니라 오히려 정치권력과 야합함으로써 신의 이름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중세기 운동으로 일어난 또 하나의 줄기는 이른바 인문주의(Humanism)다. 그것은 계몽주의라는 물결을 타고 등장했다. 계몽주의의 본질은 자율, 이성, 자연, 그리고 조화를 근간으로 삼고 있다(P. Tillich). 그런데 서구 그리스도교 보수파들은 이것에 거세게 반발하고 ‘정통은 바로 반휴머니즘’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도식을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다. 그 이유는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무지해서라거나 그 개념들이 비성서적이기 때문이라서가 아니라, 그 개념들을 표방한 프랑스혁명 등이 교권을 뿌리로부터 흔들어 놓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교회는 인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인권 개념은 바로 이 개념들을 전제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인권은 자율권이이다. 자율(autonomy)이란 자신(autos)의 법(nomos)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그것이 바로 자주권이다. 그런데 오랫동안 교권유지를 위해 ‘복종’이라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강조한 교권은 타율은 바로 신율(Theonomy)이라고 전제한 후 타율에 반대되는 자율을 신에 반항하는 논리로 몰아세웠다. 그러나 자율은 창조질서에 주어진 것이다. 하느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으며, 그에게 자연을 가꾸고 살 권리(?)를 주었다는 것은 하느님이 인간에게 자율권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주어진 법대로 산다는 것은

‘자와나 고의로 반대한다’는 말과 다르다. 율(律) 자체가 벌써 질서를 전제한다. 그것은 자(自)가 마음대로 거역해서는 안되는, 원래의 질서를 따를 때만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자율과 타율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며, 양자를 흑백의 관계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자율 안에는 진정한 타율(heteronomy)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자율을 내포하지 않는 타율은 이질적인 것의 강제로서, 내가 가야 할 본래의 길을 가로막고 다른 테로 이끌어가려는 악마적인 것일 뿐이다. 그같은 타율은 분명히 창조질서에 반하는 것이다.

왜 성서에서는 인간이 하느님의 피조물이며 하느님의 아들 땔임을 강조하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을 하느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구체적으로는 창조질서에 도전하여 인간의 창조적 자율권을 박탈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이다. 무엇이 이러한 자율권을 박탈하는가? 그것을 궁극적으로 사탄 또는 악마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상대적인 것이 절대권을 행사함으로써 신의 위치에 도전하면서 인간을 노예화하는 힘’이다. 그것은 권력으로, 부력(富力)으로, 구조악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그리스도교 지도체제도 가담한 것이다. 저들은 이 자율권을 부정하기 위해서 인간의 타락설을 극대화하였다. 그리하여 자율이란 곧 범죄로서 반신성(反神性)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강변으로 그리스도론, 구원론도 타락에 국한된 교설로 만들어 버렸다. 사람에게는 선에 대한 분별능력이 없고, 그것에의 의지도 없으며, 그것을 실천할 능력은 더더욱 없다고 가르쳤던 것이다. 그 결과 “...으로만”이라는 도그마가 판을 치게 되었다. 이러한 도그마를 무기로 삼은 교권은 정치권력이나 사회 지배계층에 의해 야기된 인권문제에 소홀하였을 뿐 아니라 신의 주권이라는 이름 아래 인권을 짓밟는 사태를 빈번히 연출하였다.

우리에게 처음 그리스도교를 전한 세력은 미국의 보수파였다. 저들은 정통을 자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통을 근본주의와 일치시킴으

로써 그리스도교의 본류를 대변한 것이 아니라 교조주의에 빠지고 있었다. 저들은 한국에 들어서면서부터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실상은 정치와 야합하였다. 저들은 이조말 왕권에 충성할 것을 권했고, 일본에 식민지화되었을 때에는 정교분리론을 표방하면서 일제에 의해 짓밟히는 인권에 무관심하도록 하면서 단지 추상적인 사랑을 설교하는 것만이 그리스도교의 본질인 양 교육하였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 점에서 저들에게 승복하지 않았다. 그것은 3.1봉기사건 때 한국교회가 총궐기한 사실에서 입증되었다. 이 사건은 악한 권력으로부터의 해방 없이는 사랑은 한낱 허구로 전락되며, 정치권력과의 투쟁 없이는 인권이 보존될 수 없음을 몸으로 체험하고 보여준 의거였다. 그러나 그 운동은 잔인하게 짓밟혔다. 그 후로 탈진상태에 빠진 그리스도교는 점령세력과의 마찰을 피하면서 연명해 왔다. 그러한 오랜 습성이 체질화되다시피 했는데, 근자에 일부 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과오를 뼈저리게 느끼고 인권옹호의 근원적인 투쟁은 인권유린의 장본인을 제도(濟度)하는 테서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역사 현장에서 배웠다. 그래서 그들은 국가와 종교의 관계를 천명했다. 그 천명에서의 대전제는 ‘인간의 기본권은 국가가 있기 이전에 하느님에게서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국가는 하느님에게서 받은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첫째 임무가 되는 것이다. 이 주장은 하느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근거하며, 그것의 현실화를 예수에게서 보았다. 서구에서는 로마서 13장을 내세워 국가권력에의 복종만을 강조했으나 이 선언은, 그 말씀은 바로 권력의 근원이 하느님께 있으므로 권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히는 말씀임을 분명히 했다.

1974년도의 신학적 성명은 “인간의 기본권인 생존과 자유를 빼앗는 권세는 하느님의 뜻을 배반하는 것이다. 절대권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다. 그런데 이 절대권을 도용하여 상대적인 것이 절대화할

위험성을 막기 위해 땅 위에 어떤 형상(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였다”고 성서를 해석하였으며, 요한묵시록에 하느님과 대결하는 세력을 무서운 짐승으로 상징한 것을 전거로 인간권리가 절대화된 권력에 의해 유린될 때 그리스도교회는 그것에 대해 투쟁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신학적 성명은 교회의 본질을 천명하였다. “하느님은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리스도는 권력자들에 의해 처형되었으나 하느님은 그를 살려 일으켰다. 교회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하느님의 구원행위라고 믿는 신앙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어제나 국가권력과 긴장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으며, 무엇보다도 가난한 자와 눌린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인권을 찾아주는 것을 직접적 사명으로 함은 당연한 일이다. 이같은 이해에서 교회는 국가나 정부로 하여금 하느님에게 속한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참된 사회를 이루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런 주장을 특히 예언자들의 활동을 내세움으로써 정당화하였다.

이처럼, 인권을 유린해 온 국가권력을 의식하면서 교회의 사명을 분명히 하여 구조적인 시각에서 인권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런 전제에서 신학적 성명은 인권문제를 세 항목으로 다루었다.

인권의 신학적 근거로는 위에서 이미 지적한 창세기 1장 27절과 더불어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릴 권리도 주셨다(창 1,18)는 것을 근거로 생존권·언론·신앙·결사의 자유 등은 하느님에게서 받은 권리라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권력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경제구조가 타락하여 물질이 편중되므로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는 생존권의 침해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권력에 의해 유린되어 영장없는 체포, 고문, 정당한 변호권이 박탈된 재판 등이

자행되는 현장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한국의 인권운동의 전거로서 가장 크게 부각된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예수의 선언이었다. 국가의 안전보호, 경제발전, 그리고 온갖 제도와 조직도 인간(인권)을 위해서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인권을 제물로 삼는 일은 용인될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 말씀은 인권선언의 제1호라고 간주할 수 있겠다. 이 선언은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도록 되어 있는 창조질서에도 상부된다.

다음으로 신학적 선언은 그리스도교회의 선교에 대해 취급하였다. 선교의 핵심은 하느님 나라 건설에 있고 그 나라는 “역사적 사회와 정치적 영역을 포함하는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며 ‘영적’이라고 표현되는 어떤 부분에 국한된 개인적, 타계적인 특유의 종교영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대전제 앞에서 선교의 본질에 대한 전거로서 루가복음 4장 18–20절을 크게 내세웠다. 이 말씀은 선교란 인간의 어떤 부분을 구원하는 행위가 아니라 전체로서의 인간을 악한 사회구조에서 해방하며 이로써 새 날(회년)을 건설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불가피하게 정치적, 사회적 현실 속에서 선교활동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황금만능주의, 체제의 속박, 권력의 압박, 이데올로기의 절대화 등은 선교활동에서 용인할 수 없는 적이다. 이러한 선교이해를 정당화한 것은 역시 그리스도의 삶 자체였다. 그는 정치적 투쟁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인간해방을 첫 과제로 삼았고,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집권자에게 처형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선교의 자유도 궁극적으로는 권력자에 의해 제지당하게 되어 있다. 예수가 나를 따르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한 말씀은 바로 선교의 길이 순교의 길로 이어질 것을 전제한 말씀이다.

이러한 확고한 신학적 입장은 공장이나 농촌, 또는 빈민촌 등에서

사는 이들의 생존권(인권)을 위해서 싸우는 것과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일치시키는 선교행위를 낳게 되었다. 그런데 이같은 선교 이해는 정부가 이 선교행위를 종교의 영역을 벗어난 불온행위라 간주하고 박해하는 현장에서 형성되었다. 신학적 성명은 결론으로, 인권옹호를 위한 여러가지 소중한 한국교회의 선언문들이 신학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천명함과 동시에 그러한 선언을 가능하게 한 선교현장의 활동을 “예수의 선교의 현대적이며 상황적인 수행이라고 보고 그것들을 지지한다”고 하여 그 내용의 신학화를 다짐하였다.

3. 일반적 인권 이해와 신학적 입장

「마그나 카르타」 이후 「권리청원」, 「인신보호법」, 「권리장전」 등이 나오게 되었고, 미국은 그것을 바탕으로 「버지니아 권리장전」에서 현대적인 의미의 인권선언을 내놓은 다음 미국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는데, 그 골자는 인권옹호이다. 그 후의 법 수정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권옹호를 견고히 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었다. 프랑스는 「버지니아 권리장전」의 영향 아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했는데 2차대전 이후 제 4공화국 헌법 역시 인권옹호에 초점을 두었다. 독일은 바이마르 헌법을 제정했다. 그런데 그것이 ‘합법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나치의 도구가 되는 쓴 경험을 한 이후 독일은 본(Bohn)의 기본법에서 인권을 무엇보다 먼저 규정하였다. 그 제1조에 “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의무이다”라고 규정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미국 독립선언서에서 “우리는 다음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확신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하느님에 의해서 양보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인권 존중의 역사에 바탕을 두어 마침내 1948년에 유엔 인권선언이 이루어졌다. 그 제1조에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 이성과 양심을

받았다”고 했다.

이상과 같은 제반 선언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인권은 국가 이전에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인식이다. 둘째, 이 인권이 권력집단에 의해 유린될 수 있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그것에서 보호하려고 한다. 세째는,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둘째의 인식은 중요하다. 이 선언들이 점점 인권옹호를 제1의 과제로 삼게 된 것은 각국이 국가권력의 횡포를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가령 프랑스의 제4공화국 헌법 전문에서는 “인간을 굴복시키고 타락시키려고 한 모든 정권에 대해 자유인들이 쟁취한 승리의 다음날에 …”라고 밝혔고, 독일의 기본법은 히틀러에 의한 인권유린의 쓰린 경험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상의 여러 선언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유엔 인권선언은 신학적으로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선언에는 성서의 기본 정신이 작용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인권존중의 선두에 선 듯한 미국에서 이 인권선언이 백인에게는 적용되었으나 흑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법은 인권을 존중하는 법이지만 기득권자들을 보호하는 데만 적용된 것이다.

1967년 버밍햄에서 비폭력 시위를 벌이다 구속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옥중서신을 발표했다. 즉, 그가 투쟁하는 첫째 이유는 법이 법대로 운용되지 않기 때문이요, 둘째는 불의한 법 조항을 고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독일의 히틀러가 행한 모든 행동은 기존법에 의할 때 ‘합법적’이었고, 형가리 투사들의 모든 행동은 ‘불법적’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킹목사는 인권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것은 기득권의 보호와 인권보호가 혼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득권이 어떤 수단으로 얻어지는지는 불문에 불이고 오로지 제정되어진 법에 따라 상호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인권옹호라고 한다면 그

것은 불의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킹목사의 투쟁은 개인의 인권이 아니라 미국내 흑인 전체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개개인의 인권만을 존중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집단의 집단에 대한 횡포, 그것은 인권유린이 아닐 수 없다. 앞에 열거한 인권선언을 국시로 삼고 있는 나라들이 강자의 위치에서 전쟁을 일으켜 약소민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경제적으로 침략·수탈 함으로써 가난한 민족들을 더욱 가난하게 하는 것은 저들의 인권이 해가 강자의 논리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기득권을 마치 천부의 것인 양 전제하고 인권존중, 평등 또는 평화를 주장하는 것은 인권침해를 은폐하려는 집단적 인권유린인 것이다. 이러한 위선이 오늘의 제3세계에서 독재자들을 뒷받침하고 자본의 소수 독점과 더욱 교묘한 인권유린을 가능케 하고 있다.

우리는 인권옹호를 집단적 차원에서 이룩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서구인들의 인권선언보다 더 중요한 인권선언들을 주시한다. 가령 흑인들의 집단적 인권투쟁, 달라이 라마가 중공에서 축출당하고 세상에 천명한 중공 고발, 아메리카 인디언의 인권투쟁 등이 오늘과 같은 구조사회의 인권유린의 진상을 더 잘 나타내며, 인권옹호의 시야를 넓혀준다. 식민지들과 민족에 대한 차별대우 등에서 얼마나 무자비하게 인권유린이 ‘합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가! 그러므로 제3세계의 인권선언, 나아가서는 노동운동의 인권선언과 투쟁, 가난한 자의 호소 속에 담겨있는 인권유린의 현실을 더 중시하는 것이다.

이같은 현실에서 인권옹호를 위한 신학적 작업은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신학적 작업에서 가장 뚜렷한 거점은 모든 것이 하느님께 속했다는 사실이다. 하늘도 땅도, 그 위의 인간 그리고 물질이 모두 하느님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 이것을 법적·사회학적 개념으로 바꾸어 말한다면 ‘공(公)개념의 회복이다. 하느님이 세계를 창조했을 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적인 것으로 창조한 것이다.

그런데 ‘공’(公)을 사유화하는 데서 인권유린이 시작된 것이다. 땅은 경작해서 먹고 살라고 있는 것이지 사유화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사유화되었는가? 그것은 폭력으로 독점 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렇게 하여 국경이 생기고, 한 나라 안에서 도 강자는 역시 폭력으로 땅을 많이 차지하고 약자는 적게 차지하거나 전혀 차지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지배자와 피지배자,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생기고, 인권유린이 ‘합법화’되기 시작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폭력으로 확보한 영역을 국경으로 삼았으므로 그 분배가 불공평하였다. 또한 폭력으로 독점한 것이기에 그것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점점 폭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것은 전쟁이라는 집단살인의 길로 줄달음질치게 한다. 이같은 집단적 인권 유린 아래서 타인의 인권이란 파리의 목숨처럼 경시당하게 되었다. 공적(公的)이어야 할 대지가 인위적으로 사유화되었을 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사유권이 주장되고 있고, 바다 역시도 그 공성(公性)이 깨어졌다. 내 하늘, 내 바다가 된 것이다. 하늘, 땅, 바다가 모두 나의 영역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것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서될 수가 없다. 이렇게 사유화의 폭이 커지면 커지는 만큼 살인무기도 발달된다. 오늘날은 전 인류의 운명을 일순간에 결정할 무기가 장치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요즈음에는 우주에 대한 쟁탈전까지 벌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제는 함께 보고 즐기던 하늘이 쟁취의 장으로 변해버릴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소위 ‘별들의 전쟁’이라는 가공 할 만한 현실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세상에서 신학이 할 일은 하느님의 것, 그 공(公)의 영역을 사수하는 일이다.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공적인 것은 공으로 되돌리지 않고는 인권옹호는 성취될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신학적 주장은 이미 성서에 제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안식년, 그리고 희년 제도가 그것이다. 그것은 사유화되었던 것을 공(公)으로 되돌리는 제도이다. 예수가 이 희년제도를 하느님 나라와 결부시킨 것은

큰 시사를 준다.

하느님 나라는 오직 하느님의 주권만이 있는 현실이다. 그것은 바로 공만 있고 사유나 독점은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하느님 나라 도 래와 심판은 나뉘어질 수 없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심판은 바로 사유화한 모든 기득권을 공으로 돌리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 나라는 신천지 개벽이다. 그러므로 인간을 위한 투쟁은 하느님 나라 건설이라는 궁극적 소망 아래서 진행되어야 한다.

(「1970년대 민주화운동」I, 서론)